



소액 수의견적 안내 공고[민간입찰대행]

2026년 7월 14일

진천군 분임재무관

- 본 입찰 건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진천군에서 입찰 및 낙찰자 결정만 대행**하는 사항으로, 진천군과는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대가지급 등의 모든 절차는 입찰대행을 요청한 보조사업자(생거진천토마토영농회)와 직접 체결 및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본 사업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입찰대행자인 진천군에 물을 수 없습니다.**

<사업부서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득작목팀 서보미주무관 043-539-7563>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가. 사업명 : 토마토 시설환경개선 및 유통자동활성화시스템 사업
- 나. 사업량 : 토마토 비닐하우스 천장(외몽골형) 개폐구조 변경 등
- 다. 위 치 :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661-1 등 4개소
- 라. 공사에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관급자재대	공사예정금액
111,818,182	11,181,818	123,000,000	-	123,000,000

- 마.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신설공사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7. 15.(수) 10:00	2026. 7. 21.(화) 10:00	2026. 7. 21.(화) 11:00	진천군 입찰집행관PC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진천군 기술보급과(☎ 043-539-7563)**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진천군**에 있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 공동수급 불가**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사전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전자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기초금액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기초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4.5%**입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소액수의)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투찰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제외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제외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호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9. 전자계약 체결

우리 군과 전자계약을 실시하지 않고, **보조사업자와 수기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낙찰자는 **보험료 등의 금액에 대하여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 계
-	-	-	846,107	2,453,561	-	-	3,299,668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보조사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30일 이상 공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 상대방은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 ※ 계약 시, 보조사업자와 협의

가. 하도급 계약관련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조사업자와 협의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보조사업자에게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견적서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진천군 공사계약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진천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투찰 후 기타 법령상 및 행정 절차상 해석의 차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의 해석과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은 무효됩니다. 또한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또는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수급인은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기타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참고]

- 바. 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은 **기술보급과**(☎ 043-539-756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043-539-3922),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국번없이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 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사.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진천군청 **회계과**(☎ 043-539-3922), **기획감사실**(☎ 043-539-3043) 및 홈페이지(www.jincheon.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리 익명신고 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진천군 (분임)재무관 귀하